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07 발의연월일: 2025. 5. 27.

발 의 자: 강대식 • 유용원 • 강선영

백종헌 • 이인선 • 김상훈

최은석 • 유상범 • 김용태

이양수 · 고동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한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최근 중국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은 중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며 현역 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훈련 관련 군사정보를 수집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인물은 직접 군인과 접촉하여 내부 문서와 동향까지 파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외에도 복수의 사례에서 외국 정보기관의 기밀 요구 및 기밀 전달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부재로 인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

하여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군사정보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제3국을 통한 간접적인 정보 침해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5조).

법률 제 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외국을 위한 군사상 이익 제공)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5조 중 "제14조까지의"를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2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4조의2(외국을 위한 군사상
	이익 제공)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
	는 단체를 위하여 군사상 이익
	을 제공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한 사람은 3년 이상
	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11조부터 <u>제14</u>	제15조(미수범) <u>제14</u>
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조까지 및 제14조의2의